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 2016-17호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,  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
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,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19조의2에  
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30일  
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

## 1. 제안이유

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도모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(안 제5조의2 외)
- 나.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
- 나. 예산조치: 필요
- 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16. 5. 30. ~ 2016. 6. 7.)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(참조:의회사무국 의사팀, 전화 901-4521, FAX 901-4519)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(찬·반여부와 사유)

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